

충청북도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기 획 경 제 전 문 위 원 살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중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93. 11. 17.

나. 회부일자 : '93. 11. 17.

3. 제안이유

-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액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함

4. 주요골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지급하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동 조례에 월정액(예. 월 100,000이하의)으로 명시하던 것을 삭제함

5. 검토보고

[보고자 전문위원 안 창 국]

충청북도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지사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업무수행 및 행정심판등 도정업무 수행을 위해 개업중인 변호사중 2인이내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매년 예산편성 지침이 변동 될때마다 본조례를 개정해야되는 실정인바, 현행조례 제6조의 수당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조례개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무행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저 하는 것으로서 승인 하여 줌의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 (1969. 3. 26
조례 제 335호)

개정 1972. 12. 30 조례 제 553호
1987. 1. 4 조례 제 693호
1981. 1. 24 조례 제1059호
1985. 10. 25 조례 제1447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도지사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도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 (사전실적부 비치)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충청북도 촉탁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로 본다.

제3편 기획관리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

부 칙(1972. 12. 30 조례 제533호)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1. 4 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1. 24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10. 25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사 건 실 적 부

종 류	구 분	사건명	의 퇴	의 퇴내용	회 신	회 신 내 용	비 고
			년월일		년월일		
소 송 사 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 령 해 석							
기 타							